

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1/12

BASF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8.06.2012
제품: CHLORFENAPYR TECHNIC.

버전: 4.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440288/SDS_GEN_KR/KO)

인쇄일 11.06.2012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CHLORFENAPYR TECHNIC.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작물보호 유효성분

공급자/유통업자 정보:

BASF CORPORATION
100 Park Avenue
Florham Park, NJ 07932, USA

연락처:

BASF Company Ltd.
14-16 F, KCCI Building 45
Namdmoon-ro 4-ga,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전화번호: +82 2 3707-3100 /-7500
팩스번호: +82 2 3707-3122
이메일 주소: Chemregulation-KR@basf.com

비상시 연락처:

International emergency number:
전화번호: +49 180 2273-112

2. 유해성 · 위험성

유해 · 위험성 분류:

BASF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8.06.2012
 제품: CHLORFENAPYR TECHNIC.

버전: 4.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440288/SDS_GEN_KR/K0)

인쇄일 11.06.2012

급성 독성 물질: 구분 3 (흡입 - 분진)
 급성 독성 물질: 구분 4 (경구)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1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 문구:

(가스, 증기, 분진, 미스트) 흡입하면 유독함. (경구) 삼키면 유해함.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의도적인 사용이 아닌 경우)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먼지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예방조치문구 (대응):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삼켰다면, 입을 씻어 내시오. 누출물을 모으시오.

예방조치문구 (저장):

(제품이 유해위험 환경을 조성할 만큼 휘발성이 있는 경우)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십시오.

예방조치문구 (폐기):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PBT 및 vPvB 평가결과- 12번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본 항목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분류가 되지 않는 물질이나 혼합물의 전체적인 유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유해성에 대한 것임.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특성

— 생산을 위한 제품 농작물 보호제, 살충제

BASF 물질안전보건자료
일 자 / 개정: 08.06.2012
제 품: CHLORFENAPYR TECHNIC.

버전: 4.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440288/SDS_GEN_KR/KO)

인쇄일 11.06.2012

Chlor fenapyr (함량 (W/W): >= 94 %)
CAS번호: 122453-73-0
기존화학물질 목록번호: KE-05-0238
추가목록번호: 97-1-440

구체적 성분은 영업비밀임

4. 응급조치 요령

일반적인 조치사항:

응급처치 요원은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 안정된 측면 자세(회복 자세)로 눕혀 후송할 것. 즉시 오염된 옷을 벗을 것.

흡입했을 때:

환자를 안정시키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의료 조치를 취할 것.

피부에 접촉했을 때:

즉시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고 의사의 처치를 받을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눈을 뜬 상태에서 적어도 15분 정도 흐르는 물로 씻어낼 것.

먹었을 때:

즉시 입을 닦고 200-300ml의 물을 마신 후, 의료 조치를 취할 것.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증상: 자료없음

기타 의사의 주의 사항:

유해성: 자료없음

처치: 증상에 따른 처치(세정, 기능 회복), 확인된 특정 해독제 없음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건분말(dry powder), 포말, 수분 분무(water spray)

부적절한 소화제:

이산화탄소

BASF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8.06.2012
 제품: CHLORFENAPYR TECHNIC.

버전: 4.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440288/SDS_GEN_KR/KO)

인쇄일 11.06.2012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hydrogen chloride, hydrogen fluoride, hydrogen bromide,
 질소산화물, 유기염소 화합물
 위에 언급된 물질/물질군이 화재 시 방출됨.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자급식 호흡 보호장비 및 화학 보호복을 착용할 것

추가정보:
 화재에 노출될 경우 물을 분사하여 용기를 식혀줄 것 화재 및/또는 폭발시에 흡을 흡입하지 말 것.
 오염된 진화수를 분리하여 수거하고, 하수구나 폐수처리시스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관련
 규정에 따라 화재 잔여물 및 오염된 소방수를 처리하도록 할 것.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개인 보호의를 착용할 것 증기/먼지/에어로졸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호흡장비를 사용할 것 피부, 눈
 및 옷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분진 형성을 피할 것.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하천토/토양에 배출하지 말 것. 배수구/지표수/지하수에 방류하지 말 것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 시: 분진 결합제에 담아 폐기할 것
 대량 누출 시: 뒹아내거나/삼으로 퍼낼 것
 먼지발생을 피할 것. 세척을 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적절한 용기에 폐기물을
 수집하여 라벨을 붙이고 밀봉할 것. 환경 규정에 따라 오염된 바닥과 사물을 물과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할 것.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소각하거나 특정한 폐기물 처리소로 이송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취급

저장 및 작업공간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적절히 보관 및 취급하는 경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화재 및 폭발에 대한 보호조치: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조치는 없음 물질/제품은 불연성임. 제품물은 폭발성이 없음.

BASF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8.06.2012
 제품: CHLORFENAPYR TECHNIC.

버전: 4.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440288/SDS_GEN_KR/KO)

인쇄일 11.06.2012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보관

식품 및 동물 사료와 분리할 것.

저장 조건에 대한 추가정보: 습기로부터 보호할 것. 열로부터 격리할 것.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할 것.

저장 안정성:

보관기간: 24 개월간

다음 온도 이상에서는 보관하지 않도록 할 것: 40 ° C

장기간 지정된 온도보다 높은 곳에서 보관할 경우 제품의 특성이 변할 수 있음.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노출기준 (작업장 관리기준의 구성 요소):

작업장의 노출한계 알려져있지 않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사업주는 가스, 증기, 미스트, 흠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인 보호구:

호흡기 보호: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흡입성 에어로졸이나 분진이 형성되는 경우, 호흡기를 보호할 것. 고체 및 액체 입자용 고효율 입자필터 (예; EN 143 타입 P3)

손 보호:

장기간 직접적 접촉의 경우 적합한 내화학성 안전 장갑(EN 374)(추천:보호 인덱스6, EN374기준 침투시간 480분 이상에 적합, 예:Nitrile rubber(0.4mm), 클로로프렌 고무 (0.5mm), PVC (0.7mm)

눈 보호:

측면 가리개가 있는 보안경 (프레임 고글)(EN 166)

BASF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8.06.2012
 제품: CHLORFENAPYR TECHNIC.

버전: 4.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440288/SDS_GEN_KR/KO)

인쇄일 11.06.2012

신체 보호:

작업유형과 노출 가능성에 따라 에이프런, 안전화, 화학보호복 등의 신체 보호장비를 선택할 것 (필 경우: EN 14605, 분진: EN ISO13982에 따라)

일반적인 보호 및 위생상 주의사항:

산업위생 및 안전규정에 따라 취급할 것. 피부, 눈 및 옷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밀폐 작업복 착용
 권장 음식물 및 사료와 격리하여 보관할 것 작업장에서 먹고, 마시고, 흡연하는 것을 금지할 것.
 휴식시간 전과 작업 후에 손과 얼굴을 씻을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분말
 색: 백색에서 밝은 갈색
 냄새: 케톤
 냄새 역치: 결정되지 않음.

pH 값: 약 7.2
 (10 g/l, 24 ° C)

녹는점/어는점: 100 - 101 ° C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이 제품은 비휘발성 고체임.

인화점: 해당없음
 증발 속도: < 0.01
 20 ° C

인화성 (고체/가스): 발화하지 않음 (지침 92/69/EEC, A.10)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결정되지 않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결정되지 않음.

자연발화 온도: 자료없음

분해 온도: 183 ° C (DTA)
 지정, 표시된 대로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 분해되지 않음

자기발화성: 자기발화하지 않음 (방법: Directive 92/69/EEC, A.16)

폭발위험성: 비폭발성 (Directive 92/69/EEC, A.14)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성질: 화재 확산성 없음 (Directive 92/69/EEC, A.17)

BASF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8.06.2012
 제품: CHLORFENAPYR TECHNIC.

버전: 4.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440288/SDS_GEN_KR/K0)

인쇄일 11.06.2012

증기압:	< 0.0000001 밀리바 (25 ° C)	
밀도(비중):	자료없음	
상대밀도:	1.611 - 1.648 (20 ° C)	(OECD Guideline 109)
벌크밀도:	360 - 540 kg/m3	
증기밀도: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수치임	
수용해도:	0.12 mg/l (25 ° C)	
용해도(정량적) 용매:	dimethyl sulfoxide, acetone, acetonitrile 용해성	
n-옥탄올/물 분배계수(log Pow) :	4.83 (25 ° C)	
표면장력:	73.3 mN/m (1 g/l)	
점도, 유동적:	해당없음	
점도, 운동학적:	해당없음	
몰 분자량:	407.62 g/mol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7번 항목의 취급 및 저장방법을 참조할 것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자료없음

피해야 할 물질:
 강산화제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반응의 가능성:
 지정, 표시된 대로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지정된 대로 저장 및 취급한 경우 유해 분해물이 발생하지 않음

BASF 물질안전보건자료
일 자 / 개 정: 08.06.2012
제 품: CHLORFENAPYR TECHNIC.

버전: 4.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440288/SDS_GEN_KR/K0)

인쇄일 11.06.2012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급성독성

급성경구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1회 노출포함):
LD50 쥐 (경구): 441 mg/kg (OECD Guideline 401)

급성경구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1회 노출포함):
LC50 쥐 (흡입): 0.83 mg/l 4 h (OECD Guideline 403)
분진 에어로졸로 실험하였음.

급성경구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1회 노출포함):
LD50 (토끼) (경피): > 2,000 mg/kg (OECD Guideline 402)

자극성

자극성 작용에 대한 평가:
피부에 자극성 없음. 눈에 대한 자극성 없음.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 비자극성 (OECD Guideline 404)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 비자극성 (OECD Guideline 405)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과민성 평가:
잠재적 피부 감작성 징표는 없음

기니 픽 maximization 시험 기니 픽: 비 과민성 (OECD Guideline 406)

반복 투여 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 반복 노출 포함)

반복투여 독성 평가:
동물에 고용량을 반복투여한 후에도 특정 장기독성 물질이 관찰되지 않음.

흡인 유해성:
흡입 유해성 없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BASF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8.06.2012
 제품: CHLORFENAPYR TECHNIC.

버전: 4.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440288/SDS_GEN_KR/KO)

인쇄일 11.06.2012

변이원성 평가:

미생물과 포유류 세포배양을 이용한 다양한 시험에서 변이원성영향은 나타나지 않음. 본 물질은 포유류시험에서 변이원성을 나타내지 않음.

발암성

발암성 평가:

설치류를 이용한 장기적인 실험에서 먹이로 이 물질을 주었을 때 발암성은 나타나지 않음.

생식독성

생식독성 평가:

동물실험 결과에서 생식능력 손상은 나타나지 않음.

발달 독성

최기형성 평가:

동물 연구에서 성장 독성/기형발생 작용이 나타나지 않음.

기타 해당되는 독성정보

| 포유동물에 대한 실험에 의하면 신경독성 영향 없음

남용하는 경우 건강에 유해할 수 있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노출):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노출):

참조: 반복투여독성

독성의 수치적 척도 (급성독성 추정치 등) :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수생생물에 대한 독성 평가:

수중 생물에 대한 고독성(급성 영향)

어독성:

BASF 물질안전보건자료
일 자 / 개정: 08.06.2012
제 품: CHLORFENAPYR TECHNIC.

버전: 4.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440288/SDS_GEN_KR/KO)

인쇄일 11.06.2012

LC50 (96 h) 0.0074 mg/l, Oncorhynchus mykiss (Directive 84/449/EEC, C.1, 유수식)

수생무척추동물:

EC50 (48 h) 0.56 mg/l, Daphnia magna(물벼룩) (Directive 84/449/EEC, C.2)

수생식물:

EC50 (72 h) 0.132 mg/l, Scenedesmus subspicatus

다른 육생비포유동물:

자료없음

토양 이동성

환경 구분간의 수송평가:

토양에 노출된 후 토양입자로 흡수될 수 있으므로 지표수 오염은 예상되지않음

잔류성 및 분해성

생분해성 및 제거율 평가 (H2O) :

쉽게 생분해되지 않음(OECD 기준에 따라)

생물 농축성

생물농축가능성 평가:

생물체 내에 축적 가능성 없음

생물 농축성:

생물농축 계수: 116, Cyprinus carpio

생물체 내에 축적 가능성 없음

기타 유해 영향

다른 환경독성정보:

관리 및 통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환경에 유출해서는 안 됨.

13.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매입 또는 소각처리 할 것.

오염된 용기:

오염된 포장용기는 물질/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비워서 처리할 것.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BASF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8.06.2012
 제품: CHLORFENAPYR TECHNIC.

버전: 4.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440288/SDS_GEN_KR/KO)

인쇄일 11.06.201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국내 운송규정:

위험 분류: 6.1
 포장 그룹: III
 ID-Number: UN 2588
 위험 표지: 6.1, EHSM
 적정 선적명: 살충제 (독성 고체, 별도 품명의 것은 제외) (함유 클로르페나피르)

해상운송

IMDG

위험 분류: 6.1
 포장 그룹: III
 ID-Number: UN 2588
 위험 표지: 6.1, EHSM
 해양오염물질: 예
 적정 선적명: 살충제 (독성 고체, 별도 품명의 것은 제외)
 (함유 클로르페나피르)

Sea transport

IMDG

Hazard class: 6.1
 Packing group: III
 ID number: UN 2588
 Hazard label: 6.1, EHSM
 Marine pollutant: YES
 Proper shipping name: PESTICIDE, SOLID, TOXIC, N.O.S. (contains CHLORFENAPYR)

항공운송

IATA/ICAO

위험 분류: 6.1
 포장 그룹: III
 ID-Number: UN 2588
 위험 표지: 6.1
 적정 선적명: 살충제 (독성 고체, 별도 품명의 것은 제외)
 (함유 클로르페나피르)

Air transport

IATA/ICAO

Hazard class: 6.1
 Packing group: III
 ID number: UN 2588
 Hazard label: 6.1
 Proper shipping name: PESTICIDE, SOLID, TOXIC, N.O.S. (contains CHLORFENAPYR)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자료없음

BASF 물질안전보건자료
 일자 / 개정: 08.06.2012
 제품: CHLORFENAPYR TECHNIC.

버전: 4.0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작성된 것임.

(30440288/SDS_GEN_KR/KO)

인쇄일 11.06.2012

15. 법적 규제현황

국내 법규/규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자료작성 및 비치 등에 적용 대상 화학물질임.

경고표시를 위한 유해 결정성분: 클로르페나피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에 해당됨: Chlor fenapyr, CAS번호 122453-73-0, 97-1-440, 제한
 함량: 25.0 %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비위험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및 해당 법규의 준수는 폐기물 발생자의 책임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상의
 해당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기존화학물질목록:

ECL, KR 배포 / 등록

ECL, KR 배포 / 등록

ECL, KR 배포 / 면제

작물보호 유효성분

16. 기타 참고사항

왼쪽 여백에 수직선은 기존 버전의 개정을 나타냄

이 안전정보에 포함된 데이터는 당사의 최신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것 이며, 제품의 특성 (제품 규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 또한 합의된 특성이나 이 안전정보에 포함된
 데이터로 부터 추론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합성도 아님. 이 제품의 사용자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 등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현행 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